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 - 255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KB라이프생명보험㈜
임직원	甲

2. 조치내용

○ **(원안의결)**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251조 제3항에 따른 '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무 위반'에 대하여 KB라이프생명보험㈜에 과태료 24백만원 부과, 「자본시장법」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'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'에 대하여 甲에 과태료 2.9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무 위반

□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는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업무 담당자와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업무 담당자 간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·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,

○ 회사는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동안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업무부서와 집합투자업 업무부서 담당자 간의 회의·통신기록을 유지하지 않았으며, 준법감시인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

□ 동 건은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251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

나.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

□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분기별(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)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데도,

○ 甲은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O회 매매하고, 월별*로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* 甲은 20xx.xx.xx.부터 회사의 투자운용인력으로 등록

□ 동 건은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6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음

4. 근거법규

□「자본시장법」제251조(보험회사에 대한 특칙) 제3항,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제273조(보험회사에 대한 특칙),「자본시장법」제63조(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) 제1항 제3호